

박도원 행정법 강의계획서

cafe.daum.net/dowon-publiclaw

“행정법 고득점을 위한 MASTER PLAN을 제시합니다!

전체내용에 대한 목차 중심의 논리적 흐름 확인,
최종합격자 스터디매니저의 정밀채점과 구체적인 학습관리,
강사 직접 대면첨삭과 3단계 연상학습법(TRS) 훈련,
답안지스킬 향상을 위한 강사 직접진행의 스터디로

행정법 고득점을 위한 최종마무리를 시작하십시오.”

■ ■ 담 당 박 도 원

■ ■ 강의일정 2018년 4/9(월) ~ 5/1(화), 총 20회

■ ■ 시 간 [오후 실강반]: 개강일은 시험없이 1시40분부터 강의진행
(시험) 1시 ~ 2시 / (강의) 2시10분 ~ 5시20분
※ 실강반도 필기자료가 제공되며, 오후 강의 후 저녁 시간에는 강사 직접 진행의 스터디가 매일 진행됩니다.

[당일 저녁영상반]: 개강일은 시험없이 6시40분부터 강의진행
(시험) 6시 ~ 7시 / (강의) 7시10분 ~ 10시20분

[익일 오전영상반]: 개강일은 시험없이 8시40분부터 강의진행
(시험) 8시 ~ 9시 / (강의) 9시10분 ~ 12시20분

■ ■ 강의교재 ▶ 주교재 : 행정법 실전논점 200제(박도원, 서점구매)
▶ 부교재 : 핵심키워드암기장(무료제공)

■ ■ 강의특징 1. 스터디 조별 편성과 스터디매니저(최종 합격자) 학습관리

(1) 첫날 스터디신청서를 제출받아 직렬별 스터디 조를 편성합니다.

이미 스터디를 하는 경우, 스터디를 원하지 않는 경우, 최소인원의 스터디를 원하는 경우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스터디를 조직하고 강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2) 합격자 스터디매니저 상담은 등록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수강등록순으로 상담순서를 결정하여 공지합니다. 합격자 스터디매니저 채점을 받는 날에는 반드시 수강번호를 기입하여, 별도 관리되는 ‘스터디매니저 답안지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강일 세부사항 공지)

2. 스터디매니저(최종 합격자) 정밀채점 및 답안지 상담

(1) 답안작성자와 채점자의 장벽 해소

채점자와 답안작성자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3~4일에 한번은 스터디매니저가 답안지 정밀 첨삭을 진행합니다.

(2) 스터디매니저의 채점답안지 상담

합격자 스터디매니저는 하루 10부 이하만을 정밀첨삭하고, 다음날 채점답안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는 스터디매니저의 답안지 상담과정을 통해 수험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3순환을 처음 경험하는 수험생 또는 답안지 기초가 부족한 수험생은 스터디매니저와의 상담이 답안지 작성능력 향상을 위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3. 강사 답안지 상담 / 3단계 연상학습법(TRS) 훈련

(1) 도원결의 스터디 상담

수강등록순서에 따라 스터디매니저 상담을 받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강사 진행의 2차 답안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답안지 돌려보기와 내용첨삭이 진행되고, 각 답안지에 대한 강사의 답안지 코멘트가 진행됩니다.

(2) 3단계 연상학습법 훈련

'자기만의 최고목차'와 '자기만의 최고답안'은 강사가 직접 제작하여 배부합니다. 수험생의 개인적인 수정작업을 통한 '자최목'과 '자최답'은 권장사항입니다. 답안지 상담이 끝나면 '3단계 연상학습법(TRS)' 훈련을 통해 3순환의 모든 모의고사와 관련 자료를 2시간 내에 복습이 가능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이번 순환의 핵심입니다.

4. 최고답안 강평과 중요질문 복습동영상 제공

(1) 최고답안에 대한 코멘트는 매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등록합니다.(유튜브에서 수강가능)

각 채점자가 선별한 최고 답안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답안지 실력이 부족한 수험생에게 단기에 답안지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합니다. 강평은 인강 수강생도 공유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올리고, 이러한 자료를 자기만의 최고답안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스터디매니저가 선별한 중요 질문사항도 복습동영상에 포함됩니다.

스터디매니저가 답안지 상담 시 나온 질문내용 중 수험생이 공유해야 할 내용을 선정하여 제출하면, 다음날 복습동영상에 스터디매니저가 선별한 질문내용을 반영하여 복습동영상을 제작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스터디에 참석하지 못하는 수험생이나 인강 수강생에게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5. 개별상담 및 질의응답

날마다 오전 11시 ~ 강의 전까지 학원에서 강사진행의 개인상담을 진행합니다. 조별 또는 개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날 도원결의 스터디에서 해결하지 못한 질문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시간을 이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3순환 과정은 크고 작은 좌절과 고난이 함께 하는 순환이므로 그러한 자신을 점검하고 상담을 통해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6. 저녁 도원결의 스터디 (강의실에서 진행)

(1) 6:30~7:00

전날 배운 쟁점 중 일부에 대한 키워드 쓰기, 3단계 연상훈련(TRS훈련)

(2) 7:00~9:00

개인복습 시간입니다. 이때, 스터디매니저 1차 상담과, 강사 2차 상담이 병행됩니다. 그 외 수험생은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체크합니다.

(3) 9:00~10:00

조별 스터디가 진행되며, 스터디 방식은 ① 당일 강의내용 이해, ② 목차쓰기, ③ 약식 답안지 쓰기, ④ 기출쓰기 등 조별로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따라서, 조별 스터디는 내용을 고려하여 스터디 조를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조별 스터디를 하지 않는 경우 개인복습을 진행해도 좋고, 다른 스터디를 위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10:00~10:30

조별 스터디에서 나온 질문사항을 정리하여 간단한 복습강의를 진행합니다. 다만, 답안지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은 다음날 제공되는 복습동영상을 통해 설명합니다.

저녁 도원결의 스터디는 개인복습시간을 제외하면 총 1시간 30분 미만으로 진행됩니다. 복습 강의 30분도 중요한 내용은 다음날 복습동영상에 반영되므로, 실질적으로 1시간 정도 도원결의 스터디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7. 강의 진행 방향

(1) 맥락 행정법

행정법의 전체를 관통하는 맥락을 이해하고 답안지에 녹여낼 수 있도록, 쟁점의 심화학습과 소송법적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2) 사례풀이훈련

3순환 기본교재인 실전논점에 주요기출사례를 포함하였습니다. 기출을 통한 “논점추출훈련”과 “답안지 쓰는 법”에 대한 훈련이 병행됩니다. 특히, 2순환을 경험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기본 사례를 통한 연습이 2순환을 보충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3) 고득점 포인트

쟁점에서 ‘숨은 +5점 찾기’를 통해 각 쟁점의 고득점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기초가 부족한 경우에는 쟁점추출과 사안포섭에 주력하고, 수험경력이 있는 수험생은 고득점 포인트를 통해 자기만의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8. 마치며...

3순환의 목표는 ‘답안지 쓰기’입니다. 아무리 이해가 많이 되고 완벽한 암기가 되어 있어도, 사례문제가 요구하는 답안지를 쓰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순환은 그동안 여러분이 흘린 모든 땀이 답안지에 결실로 나타나는 순환입니다.

이러한 3순환에서 수험생 눈높이에 맞는 스터디 매니저의 제1차 답안지 상담과, 강사의 제2차 답안지 상담은, 수험 행정법에 눈뜨고, 답안지 작성의 노하우를 찾는 최고의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다만, 공익적 마인드로 연수원 입소 전 여러 계획을 미루고 ‘스터디매니저’를 지원해준 선배 합격생들의 마음이 장래 ‘합격자 스터디매니저’가 될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 3순환이 수험생 여러분에게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과 필승의 자신감을 굳건히 하는 후회없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도별 강의내용(진도별 핵심논점)

강의회차	날짜	강의주제
■ 제 1 회	4월 9일(월)	행정소송 일반, 대상적격
■ 제 2 회	4월10일(화)	원고적격, 협의의 소이익
■ 제 3 회	4월11일(수)	기타소송요건, 가구제
■ 제 4 회	4월12일(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위법판단의 기준시, 기속력
■ 제 5 회	4월13일(금)	행정심판
■ 제 6 회	4월14일(토)	공·사법 구별기준, 법률유보(자금지원과 법률유보),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제 7 회	4월16일(월)	공정력과 구성요건적효력,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특별행정법관계
■ 제 8 회	4월17일(화)	사인의 공법행위(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신고, 인허가의제 건축신고)
■ 제 9 회	4월18일(수)	법규명령의 한계,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처분적 법규명령,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제 10 회	4월19일(목)	행정계획(행정계획의 법적성질, 형량명령원칙, 계획변경청구권)
■ 제 11 회	4월20일(금)	행정행위(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판단여지, 허가, 특허, 인가)
■ 제 12 회	4월21일(토)	행정행위의 부관
■ 제 13 회	4월23일(월)	행정행위의 하자(개정법령적용과 신뢰보호, 하자승계, 하자의 치유와 전환),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단계적 행정결정,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 제 14 회	4월24일(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제 15 회	4월25일(수)	행정절차, 정보공개제도
■ 제 16 회	4월26일(목)	행정상 손해배상
■ 제 17 회	4월27일(금)	행정상 손실보상
■ 제 18 회	4월28일(토)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 제 19 회	4월30일(월)	공무원법, 공물법
■ 제 20 회	5월 1일(화)	경찰행정법 기타 각론